V 맺음말

민영건강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첫째, 소비자의 실손 계약 지속성 제고를 위한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의 공통 위기로 작용하는 만큼,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 가입자이며 청구도 연간 1억 건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청구방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현행 법률에 의거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의 경제적 실질이 급여공단부담금에 해당되므로 실손 보장에서 제외함은 명확하며, 다만 환자의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의 발생과 지원 시점 간의 시차 축소를 위해 공·사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림 V-1〉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

구 분	정책 과제	비고
지속성	• 계약의 지속성을 위한 노령기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 평준보험료+ 의료저축계좌(연령준비금)
	• 공급의 지속성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 비급여 수가 가이드 도입+협의체 운영
편의성	• 소비자의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구전산화	✓ 중계기관방식 표준청구전산시스템 운영
공·사 건강보험 역할 정립	•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 필요성 검토	✓ 국민 후생 증진,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점
	• 의료비 발생 시점과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시점 간격 축소	✓ 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교환

민영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 및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장 구조의 대부분이 질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른 위험(질병) 보험료의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그리고 실손 가입자(피보험자) 구성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가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고령기까지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기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겪어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저축계좌, 민영건강보험에 평준보험료 방식 탑재 등 개인 의료비 조달 방안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하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최대 현안인 공급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손보험금 및 비급여 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가 공·사 협업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해외에 비급여 관리 사례 검토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및 비급여 통계를 체계적·시계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과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 협의체[94]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아젠다이므로, 협의체의 중점 연구 과제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보완형 역할에 적합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구조 및 규제체계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 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주는 보완형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손의료보험의 불필요한 보장으로 인해 의료 과소비를 유발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등으로 공공부문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 후생의 제고라는 큰 틀에서 실손의료보험이 보완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합리적인 보장구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해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료비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점에서 민영건강보험이 관리(복지부 역할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94)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공·사 보험 협의체'

강화는 시장기능 실패에 따른 국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보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 공공성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향후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연계법 도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